

대전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1432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1432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합107692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지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합107692 판결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 주 위 적 청 구 취 지

① D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각 증여 및 D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2 기재 각 증여를 각 취소하고, ② 원고에게, 피고 B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피고 C는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예 비 적 청 구 취 지

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1 기재 각 금전지급행위로 체결된 임치계약 및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2 기재 각 금전지급행위로 체결된 임치계약을 각 취소하고, ② 원고에게, 피고 B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피고 C는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제155~156면”을 “제154~155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들은, D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내역은 있으나 피고들이 D 명의 계좌로 돈을 반환한 내역은 없는 점, D가 피고들 명의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과 D 사이에서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수치인이 금전을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금전을 반환하는 약정인 소비임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이상 피고들은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D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언제든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과 D 사이에서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소비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리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원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8. 2. 8.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3. 3.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5,904,109원(= 220,000,000원 × 0.05 × 1,85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더한 275,904,109원(= 원금 220,000,000원 + 지연손해금 55,904,109원)이 된다.』

## 2. 피고들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D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

###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E 주식 매수가 다단계 투자의 일종임을 잘 알면서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D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7. 9. 1.부터 2018. 2. 8.까지 K를 통하여 D에게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합계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인 D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D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D의 불법행위가 언론에서 공론화된 시점은 2019년 초경이었고,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서 기인한 것으로 신뢰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드는 위와 같은 막연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임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경부터 D가 홍보한 E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2019년 초경 이전부터 E 사업의 내용 및

진행상황이 D가 홍보해 온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D가 E 주주 및 E 관련 채권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가 피고들에게 지급해 온 금전은 거액이고, 그 지급 명목이 분명하지 않으며, 그 지급 시기 역시 일정치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통상적인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들 역시 위와 같이 믿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현, 판사 이진영, 판사 이선미

별지